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471 호 2024. 9. 5.(목)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4-177호[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4-178호[하천점용 허가 고시]..... 4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4-179호[하천점용 허가 고시]..... 5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4-180호[하천점용 허가 고시]..... 6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4-181호[도로명주소 부여 및 폐지 고시]..... 7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1224호[도시계획시설(대로3-38호선)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9
-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 공고 제2024-20호[울산광역시 북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조문경 의원 대표발의)]..... 12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공고 → 북구공보
-----	--

회 람									
-----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미디어정보과(☎241-7125, 행정 7125)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4 - 177호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동 104-7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88조 제6항 및 제30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동 104-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 사업

나. 명 칭 :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 조성사업

3. 면적 및 규모

가. 면 적: 59,338㎡(당초) / 59,270.5㎡(변경)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단위: ㎡)

구분	계	관 리 사무소	체 육 활동장	특성화 활동장	야영장	주차장	내 도 부 로	녹 지	정 화 조	저 류 조
기정	59,338	3,104	2,969	1,619	11,786	2,043	11,467	25,245	0	1,105
변경	59,270.5	3,104	2,969	1,619	11,786	2,043	11,399.5	25,245	0	1,105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 (주)신명바다청소년야영장 대표이사 박만석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동 104-7번지

- 5. 사업기간 : 2014. 8. 28. ~ 2024. 12. 31.(변경없음)
-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명세서와 같음
- 7. 도시관리계획(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기타
				기정	변경	기정	증감	변경		
변경	2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야영장	북구 신명동 산27-1	북구 신명동 104-7	59,338	감 67.5	59,270.5	'13.12.26. 울북고 208호	면적 감소

나. 청소년수련시설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	청소년수련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감소 : 감 67.5m² -A=59,338m² → 59,270.5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정측량 결과 반영

- 8.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052-241-79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공부	편 입		성명	주소	권리자명	주소	
					당초	변경					
합계					59,338	59,270.5					
1	신명동	104-10	임	11,595	11,595	11,582	주식회사 신명바다 청소년야영장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동 104-7	남원새마을금고	전라북도 남원시 남문로 413(하정동)	근저당권
									남원새마을금고	전라북도 남원시 남문로 413(하정동)	지상권
2	신명동	104-7	임	35,511	35,511	35,470	주식회사 신명바다 청소년야영장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동 104-7	남원새마을금고	전라북도 남원시 남문로 413(하정동)	근저당권
									남원새마을금고	전라북도 남원시 남문로 413(하정동)	지상권
3	신명동	104-4	임	8,022	8,022	8,013	주식회사 신명바다 청소년야영장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동 104-7	남원새마을금고	전라북도 남원시 남문로 413(하정동)	근저당권
									남원새마을금고	전라북도 남원시 남문로 413(하정동)	지상권
4	신명동	104-15	임	375	375	375	주식회사 신명바다 청소년야영장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동 104-7	남원새마을금고	전라북도 남원시 남문로 413(하정동)	근저당권
									남원새마을금고	전라북도 남원시 남문로 413(하정동)	지상권
5	신명동	산1-3	임	1,732	1,732	1,730	주식회사 신명바다 청소년야영장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동 104-7	남원새마을금고	전라북도 남원시 남문로 413(하정동)	근저당권
									남원새마을금고	전라북도 남원시 남문로 413(하정동)	지상권
6	신명동	104-11	도	1,374	1,374	1,372.5	주식회사 신명바다 청소년야영장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동 104-7	-	-	-
7	신명동	104-12	임	554	554	553	주식회사 신명바다 청소년야영장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동 104-7	-	-	-
8	신명동	산27-3	도	160	160	160	주식회사 신명바다 청소년야영장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동 104-7	-	-	-
9	신명동	산28-2	구	15	15	15	주식회사 신명바다 청소년야영장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동 104-7	-	-	-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4 - 178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5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명	이종찬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35		
점용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745-118번지	하천칭	○ 매곡천
점용내용	○ 공연	점용면적	○ 33.0m ²
점용기간	○ 2024. 9. 21.(토) 17:00 ~ 19:00 ○ 2024. 10. 20.(일) 17:00 ~ 19:00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4 - 179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5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 명	윤광식		
주 소	울산광역시 복구 중산동 90-8번지		
점 용 위 치	○ 울산광역시 복구 신천동 745-118번지	하 천 명 칭	○ 매곡천
점 용 내 용	○ 공연	점 용 면 적	○ 33.0m ²
점 용 기 간	○ 2024. 9. 20(금) 16:00 ~ 19:00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4 - 180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5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 명	김경태		
주 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북문8길 17		
점 용 위 치	○ 울산광역시 복구 신천동 745-118번지	하 천 명 칭	○ 매곡천
점 용 내 용	○ 공연	점 용 면 적	○ 33.0m ²
점 용 기 간	○ 2024. 10. 26(토) 13:00 ~ 19:00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4 - 181호

도로명주소 부여 및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따라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5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및 폐지 : 별지 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구청 민원지적과(☎052-241-7283)에 문의 또는 주소정보누리집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에 따라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 사유
1	구유동 327-3	판지1길 31	2004. 8. 9.	2024. 9. 5.	옛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이름을 반영
2	시례동 7-7	시례새터길 81	2004. 8. 9.	2024. 9. 5.	옛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이름을 반영
3	호계동 호수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 22B5L	호수2로 47-1	2013. 12. 30.	2024. 9. 5.	옛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이름을 반영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순번	폐지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비고
1	명촌로 7	2018. 7. 25.	건물 멸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 - 1224호

도시계획시설(대로3-38호선)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993-5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대로3-38호선)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1. 사업의 개요

사업시행자의 성명	울산광역시장
사업시행자의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울산광역시청)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대로3-38호선) 사업
사업의 명칭	신천엠코아파트~국도7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
사업예정지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993-5번지 일원
사업내용	도로개설 L=0.5km, B=25~32m
사업기간	(당초) 2020. 6. 29. ~ 2025. 6. 30. (변경) 2020. 6. 29. ~ 2026. 12. 31.

2. 2.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열람기간 : 2024. 9. 5. ~ 2024. 9. 19. (15일간)
- 열람내용 : 도로개설계획(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등
-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북구청 2층 건설과

3. 3. 주민의견 제출 및 방법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서 직접 제출 및 우편제출
- 제출기간 : 2024. 9. 5. ~ 2024. 9. 19. (15일간)
 - ※ 우편 제출처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북구청 2층 건설과

4. 4. 기타사항

- 본 공고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자 등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불능 등 미 수령인, 미 통지인에 대하여는 본 열람공고로 갈음하오니, 열람장소에 비치된 관련도서 열람 후 서면으로 의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 토목팀(052-241-78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24-1224호, 사업인정관련)

사업의 명칭	신천엠코아파트~국도7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대로3-38호선)사업	
사업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993-5번지 일원	
사업 시행자	울산광역시장	
의견제출자	(성명)	(연락처)

의견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1조에 따른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4 - 20호

울산광역시 북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조문경 의원 대표발의)

울산광역시 북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5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1. 제정이유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지원사업 및 예산의 지원(안 제4조 ~ 안 제5조)
-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안 제6조 ~ 안 제7조)
- 비밀준수의 의무(안 제8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9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1) 보내는 곳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우 44248)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전문위원실)

2) 전화 : 052)241-8983 / 팩스 : 052)241-8979

다.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의견서 : 하단 참조

4. 그 밖의 사항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입법예고) 및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고시공고)에 첨부물로 게재하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울산광역시 복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수감명령 대상자 및 갱생보호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2. 자격증 취득 및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지원
3.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
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국민의 협력 등) ① 모든 국민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지위와 능력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

③ 국가는 이 법의 집행과정에서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 등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3조(대상자) ①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이하 “보호관찰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59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2.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3. 「형법」 제73조의2 또는 이 법 제25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된 사람
4.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5.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② 사회봉사 또는 수감을 하여야 할 사람(이하 “사회봉사·수감명령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 또는 수감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2.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감명령을 받은 사람
3.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사회봉사 또는 수감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③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이하 “갱생보호 대상자”라 한다)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제94조(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와 공단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법규명 : 울산광역시 북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입법예고내용	의견	비고